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5. .

제 안 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기술보증기금의 자료제공 요청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는 개정안에 더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 과세정보 확인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5항 신설).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0조제2항제6호 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자료”를 “그 밖에 과세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5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기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제28조제1항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3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밖에----------.	제5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기금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 이와 관련된 사업자등록자료의 구체적 항목에 한한다)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제28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납세자의 인적 사항과 사용 목적----------다음 각 호의 과세정보 제공----------. ----------.	② (개정안과 같음)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1.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소득의 종류, 금액, 원천징수의무자 및 납세지 2. 「상속세 및 증	1. ~ 5. (개정안과 같음)

		여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재산의 종류, 금액, 상속개시일 및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 3.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재산의 종류, 금액 및 납세지 4.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자료 5. 「국세기본법」,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될 환급금 및 가산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자료	6. 그 밖에 과세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091

발의연월일 : 2026. 1. 16.

발 의 자 : 강승규・김소희・임이자
구자근・신동욱・김미애
김기현・성일종・강명구
김재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술력이 있으나 담보능력이 미약한 신기술사업자의 금전채무를 기술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여 재무건전성을 유지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기금의 보증잔액과 대위변제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구상권 회수 실적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가상자산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자료제공 요청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과세정보와 관련된 제출자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채무자의 은닉재산 파악 및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료제공 요청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과세자료 항목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금의 구상권 회수율

을 높이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및 제2항).

법률 제 호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납세자의 인적사항과 사용 목적”으로, “과세정보(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 이와 관련된 사업자 등록자료의 구체적 항목에 한한다) 제공”을 “다음 각 호의 과세정보 제공”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소득의 종류, 금액, 원천징수의무자 및 납세지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재산의 종류, 금액, 상속개시일 및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
3.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재산의 종류, 금액 및 납세지
4.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자료
5. 「국세기본법」,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

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될 환급금 및 가산금

6. 그 밖에 과세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기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제28조제1항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3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밖에----------.
② 기금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 이와 관련된 사업자 등록자료의	② ----------납세자의 인적 사항과 사용 목적----------다음 각 호의 과세정보 제공----------. ----------

구체적 항목에 한한다)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제28조제1항 제7호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
	1.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소득의 종류, 금액, 원천징수의무자 및 납세지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재산의 종류, 금액, 상속개시일 및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 3.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재산의 종류, 금액 및 납세지 4.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자료 5. 「국세기본법」,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될 환급금 및 가산금 6. 그 밖에 과세정보 등을 확인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